「위대한 헌신, 영원히 가슴에」 호국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.

식품의약품안전처
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
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품질부적합 의약품(한약재) 판매중지 및 회수·폐기 등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알림 [씨케이(주)-씨케이차전자]

1. 관련: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-4658(2023. 6. 13.)호

2. 위 호 관련하여 **'씨케이(주)'**에서 제조·판매한 **'씨케이차전자'**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·폐기 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등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업체명	제품명	해당 제조번호 (사용기한)	위해성 등급	회수사유
씨케이(주)	씨케이차전자	CK22-C100(2)396 (2025. 12. 7.)	2등급	품질 부적합 (잔류농약: 프로사이미돈)

3. 또한, 관련 협회에서는 귀 회원사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려 해당 제품이 유통·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. 끝.

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[illegible]

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의약품관리과장),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의[illegible]의약품안전처장(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), 식품의약품안전처장(한약정책과장), 식품의[illegible]품정책과장),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의약외품정책과장),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(의[illegible]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(의료제품안전과장),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(의료제품안전과장),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(의료제품안전과장),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(의료제품안전과장), 보건복지부장관(약무정책과장), 국방부장관(보건정책과장), 서울특별시장(보건의료정책과장), 광주광역시장(건강정책과장), 전라남도지사(식품의약과장), 경상남도지사(식품의약과장), 경상북도지사(식품의약과장), 한국소비자원장,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한국바이오제약협회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,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, 한국제약협동조합, 한국의약품유통협회, 대한약사회, 한국병원약사회, 대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, 대한한약사회, 대한한의사협회, 대한한방병원협회, 대한간호협회,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, 한국소비자연맹, 소비자공익네트워크, 소비자시민모임, 녹색소비자연대, 한국여성소비자연합, 한국YWCA연합회, 소비자교육중앙회, 한국여성단체협의회, 한국YMCA전국연맹, 한국부인회총본부, 울산광역시장(식의약안전과장), 부산광역시장(보건위생과장), 세종특별자치시장(보건의료과장), 경기도지사(보건의료과장), 전라북도지사(보건의료과장), 충청북도지사(식의약안전과장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보건위생과장), 충청남도지사(보건정책과장), 대전광역시장(식의약안전과장), 인천광역시장(보건의료정책과장), 대구광역시장(보건의료정책과장), 강원특별자치도지사(공공의료과장)

주무관 **강지윤** 주무관 **이승노** 의료제품안전과장 전결 2023.6.14. **최승진**

협조자

시행 의료제품안전과-8070 (2023. 6. 14.) 접수

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, 의료제품안전과 (둔산동) / http://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2-480-8775 팩스번호 0502-604-7992 / djmediical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.

<의약품등 회수명령 안내문>

□ 회수명령자

기관명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	
			전화	FAX
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	의료제품안전과	강지윤	042-480-8775	0502-604-7992

회수사유	○ 품질부적합(잔류농약: 프로사이미돈)	회수등급	2등급

□ 회수의무자

제조(수입)업체	씨케이(주)		
소재지	충북 보은군 보은읍 매화구인로 331-10		
전화번호	043-544-8511	FAX번호	-

□ 회수대상 제품

제품명	씨케이차전자		분류	한약재
주성분	차전자			
효능·효과	조제용 또는 제조용			
포장단위	자사포장단위	제조번호		유효기한
		CK22-C100(2)396		2025. 12. 7.

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**약사법 제71조**에 의하여 동 제품을 **회수**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회수대상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 취급자(약국개설자, 의약품판매업자, 의료기관개설자 등)는 의약품의 **사용 또는 유통·판매**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제4항에 따라 회수대상 의약품등을 반품하고 **별지제64호서식의 회수확인서**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의약품 취급자 회수 협조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

1차 업무정지 3일	**2차 업무정지 7일**	**3차 업무정지 15일**	**4차 업무정지 1개월**

아울러, 동 사실을 귀 기관의 회원 및 일반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회수대상의약품의 **원활한 회수**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회수의무자에게도**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2023. 6. 14.

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생략